Ⅱ. 保險環境 變化

1. 開放化 및 國際化

가. 經濟的需要審査(ENT, Economic Needs Test) 廢止

- 현행 보험사설립 관련 법령 및 규정중 정부당국이 보험사 新規 設立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던 ENT조항이 '97년부터 폐지되고, 보다 客觀的이고 透明한 기준으로 대체됨.

ㅇ 또한 허가거부사유 및 신청자의 이의신청권이 도입됨으로써 정부가 보험사 新規設立 申請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짐.

- ENT조항의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험사 설립자격 요건의 緩和 및 그 허가심사기준의 透明性이 제고됨으로써 외국사업자의 追加的인 國內進出 시도가 점차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생보의 경우 보험사간 競爭深化로 특히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하는 생보사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惡化될 가능성이 큼.

ㅇ 현재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만이 허용되고 있는 손해보험의 경우 新規 合作社 또는 자회사의 설립이 예상됨.

나. 크로스보더(Cross - border) 追加 許容

- 外國會社가 우리나라에 지점 또는 자회사 등의 영업거점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국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가 '97년 1월부터 生命保險 全種目, 손해보험종목 중 長期傷害保險, 海外旅行保險, 船舶保險에 대하여 추가로 허용됨.

  ㅇ 生命保險의 경우 현재 보험계약이 募集人體制를 통한 거래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조직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크로스보더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中長期的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영업방식의 고비용화에 따라 향후 인터넷(internet)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영업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그 波及效果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ㅇ 損害保險의 경우 대그룹의 손보사 보유로 인하여 시장잠식이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98년으로 예정된 보험브로커의 대외개방과 맞물려 손보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그룹의 물건 등 高額企業性物件을 중심으로 해외유출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다. 保險브로커制度 導入

- 그동안 보험업법에 關聯 規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보험시장의 여건미성숙으로 인해 그 도입이 연기되어온 보험브로

커제도가 '97년 4월부터 損害保險에 도입되고 '98년에는 生命保險에 도입될 예정임.

- 保險브로커는 보험사와의 상품 및 價格協商力을 바탕으로 계약자의 편에서 보험계약을 중개하므로 보험사간의 상품개발, 가격 및 서비스경쟁을 가속화시켜 消費者의 權益이 증대될 것임.

  ㅇ 보험브로커가 優良物件 특히 기업성 우량물건을 중개하는 경우 보험사의 가격인하 競爭이 가속화될 것임.

  ㅇ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최적의 보험상품을 중개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노력이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하는 주문형상품(tailor-made product)의 활성화가 예상됨.

- 기존 모집조직에 보험브로커가 참여함으로써 短期的으로는 募集市場의 혼란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집조직간 效率性 경쟁을 통한 모집시장의 재편이 예상됨.

  ㅇ 보험브로커는 信賴度, 財務能力, 稅制上 問題, 協商力 强化 등의 이유로 법인화, 대형화의 필요성이 있어 대형 보험모집조직의 出現이 예상됨.

- 축적된 언더라이팅 경험과 고도의 危險管理技法을 구사하는 외국의 대형브로커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보험사에 대한 가격협상력과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손해보험의 企業性 保險市場을 잠식할 가능성이 큼.

2. 自由化의 推進

가. 保險價格自由化

- 保險價格自由化 추진일정에 따라 '97년 4월부터 生命保險의 예정위험율과 이자율차배당이 자유화되고,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기본 보험료를 제외한 損害保險 전종목으로 자유요율 체제가 확대됨.

ㅇ 事後價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배당의 경우 사업비차배당을 제외한 위험율차배당과 이자율차배당이 자유화됨으로써 보험사별 사업운영실적에 따른 價格競爭이 가속될 것임.

- 이에 따라 회사별 실적치를 반영하는 보험료산출이 가능해지며 市場原理에 입각한 보험사간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노력이 제고될 것이며 고객서비스도 더욱 향상될 것임.

- 다양한 신상품이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반면 상품선택에 있어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임.

- 外形爲主의 經營戰略을 구사하는 보험사들의 경우 계약인수를 위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이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됨.

나. 再保險去來 自由化

- 정부는 '98년에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재보험거래의 자유화를 '97년 4월로 1년 앞당김으로써 早期自由化를 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93년 4월의 第1段階(항공, 재산종합) 및 '96년 4월의 第2段階(선박, 자동차, 보증, 적하, 상해, 근재, 장기 등) 재보험자유화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화재, 특종보험 등 전 종목에 대한 재보험거래가 '97년 4월부터 完全自由化됨.

- 또한 요율구득협정 및 국내사 우선출재제도가 廢止됨으로써 국내원수사간의 요율경쟁이 深化될 것이며 특히 기업보험의 요율인하가 가속화될 전망임.

- 국내사 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원수사들의 海外再保險 直去來 增加로 국내원수사들의 재재보험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며, 재보부문 수입보험료 확보차원에서 국내사간의 상호재보험 및 외국사와의 교환재보험(Reciprocity)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

- 재보험거래 자유화와 해외재보험시장의 軟化(soft market)기조의 영향으로 수지역조현상이 심화될 것임.

  ㅇ 損害率이 良好한 고액기업성물건의 경우 요율인하경쟁이 예상되는 반면에 不良物件의 경우 인수거부 또는 요율인상이 예상됨.

- 再保險 去來의 완전자유화에 따라 기존의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외국의 유수한 재보험자에 비해 擔保力, 技術力, 서비스능력 등에서의 경쟁력이 脆弱한 국내 재보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다. 保險社 資産運用의 先進化 및 自律化 擴大

- OECD가입과 정부의 行政規制緩和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資産運用部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전략과 투자기법의 선진화 노력이 한층 중요해 질 전망임.

  ㅇ 자율운용자산제도를 이용하여 보험사들의 주가지수선물 등 派生商品에 대한 投資가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차 보험사의 투자기법의 선진화와 투자대상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보험사에 대한 契約者貸出制度의 廢止에 따라 대출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대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보험사에 대한 콜머니허용에 따라 자금차입의 폭이 확대되고 자금운용의 自律性이 提高됨과 동시에 국공채창구판매나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서 타금융권과의 업무제휴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3. 其他

가. 金融産業 業務領域 調整 및 金融機關間 引受·合併

- 「21世紀 經濟 長期構想」의 금융산업개편안에 따라 2000년까지의 業務領域 調整은 은행, 증권, 보험을 3대축으로 유지하되, 異種 業種의 핵심업무에 대한 직접겸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자회사를 통한 異種 業種의 相互進出 폭을 확대허용함.

- OECD가입에 따라 외국금융기관들의 직접 進出이 가능해져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의 世界的 潮流인 겸업주의화가 국내금융제도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임.

- 子會社 方式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업종간 업무영역조정이 OECD가입을 계기로 예정보다 빠른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ㅇ 異種 業種의 핵심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폭이 예상보다 早期에 커질 수 있음.

· 은행간 합병시 보험사 신설이 가능해짐으로써, 타업종의 보험업 진출과 같은 업무영역 조정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업과 타업종간의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業務提携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ㅇ 현재 보험회사는 일부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와 상품 및 판매상의 업무제휴를 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戰略的 提携를 강화해갈 것으로 전망됨.

- 현행「金融機關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이 1997년 3월 3일부터「金融産業의 構造 調整에 관한 法律」로 개정·시행될 예정임.

ㅇ 동 개정으로 금융기관 합병에 대해서 개별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마련되고, 합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리해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

ㅇ 不實金融機關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인수·합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과 맞물려 일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나. 非課稅家計長期貯蓄 受信競爭 加速

- '96년 10월 21일 부터 발매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현행 개인연금과 같이 대부분의 金融機關에서 취급할 수 있고 적용시한이 '98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수신경쟁이 가속화될 것임.

- 보험사의 경우 은행, 투신사, 상호신용금고 등 타금융기관에 비해 收益率이 떨어지나 각종 保障惠澤 및 부가서비스 제공과 募集組織을 활용한 적극적 영업전략을 구사할 것임.

ㅇ 그러나 非課稅家計長期貯蓄이 비교적 短期商品이고 稅制惠澤도 타금융기관과 동일하며 滿期에 一時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때 보험권이 타금융권에 비해 과거 개인연금상품 도입시와 같은 수신경쟁에서의 경쟁력확보는 어려

올 것으로 예상됨.

ㅇ 生命保險의 경우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 기존의 대표적 저축성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을 대체하여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신계약고는 크게 萎縮될 것이며, 損害保險의 경우 장기보험상품중 마이라이프보험을 대체하여 동상품의 신계약 위축이 예상됨.